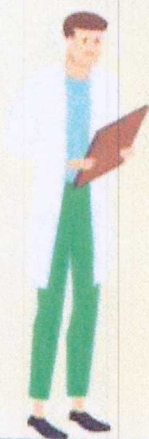


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연명의료결정제도

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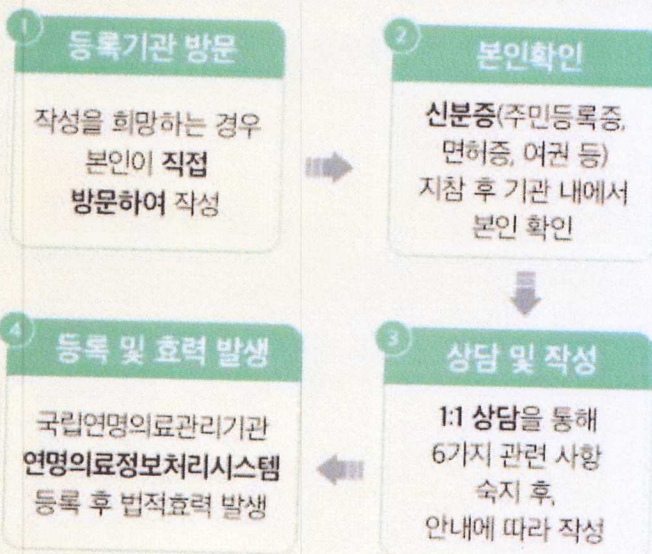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(연명의료)을 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, 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2018. 2. 4.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시행)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?



보건복지부

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대표전화 1855-0075)